

예산총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41,379,133	19,241,374
일반회계	582,224,492	17,466,735
특별회계	59,154,641	1,774,639
공기업특별회계	48,714,003	1,461,420
상수도공기업	26,603,442	798,103
하수도공기업	22,110,561	663,317
기타특별회계	10,440,638	313,219
의료급여기금운영	753,786	22,614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662,240	19,867
농공지구조성사업	5,943,573	178,30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62,600	4,878
수질개선	519,172	15,575
주택사업	2,005,241	60,157
기반시설	21,889	657
장기미집행	372,137	11,16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917,05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8,0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